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1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,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3명 중 1명(5급 1명)은 감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6. 00. ~ 6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1항 중 “2022년 7월 10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(존속기한: 2022년 12월 31일)

총계	2
일반직 계	2
3급 또는 4급 이하	2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및 정원)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에 따라 <u>2022년 7월 10일까지</u>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 둔다.	제49조(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및 정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2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50